#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형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477

발의연월일: 2025. 5. 12.

발 의 자:김형동·배준영·조경태

김소희 • 유용원 • 우재준

박덕흠 • 조지연 • 김대식

김장겸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은 「보험업법」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에서 매년 산정한 결과를 따르며, 보험요율 산정 방식은 환경책임보험의 최근 손해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 체계는 발생 빈도는 낮지만 한 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대규모 환경오염사고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.

이에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산정할 경우,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요율 산정의 원칙은 적용하되 환경책임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설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고, 보험료 등을 변경할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그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.

또한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약정으로 운

영 중인 환경피해준비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8조의2(기초서류의 제출·변경 등)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과 약정을 체결하려는 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 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1. 사업방법서, 보험약관,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(이하 "기초서류"라 한다)
  - 2. 그 밖에 정관, 법인등기부등본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
  - ②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의 보험요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 자료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보험가입 대상 시설별 로 산정하여야 한다.
  - 1. 「보험업법」 제129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적용할 것
  - 2. 제38조의2에 따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할 것
  - ③ 환경부장관은 보험자가 제1항에 따른 기초서류를 제출·변경하 려는 경우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, 보험료 및 해약 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대하여 「보험업법」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

율 산출기관 또는 같은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의 검 증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.

- 제18조의3(환경피해준비금의 조성) ① 보험자는 대규모 환경오염피해 위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 준비금 (이하 "환경피해준비금"이라 한다)을 적립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환경피해준비금은 환경책임보험의 순보험료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적립한다.
  - ③ 환경피해준비금은 제2항에 따른 적립금과 그 운용 수익금 및 그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  - ④ 보험자는 대규모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보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손해율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할 경우 환경피해준비금으로 우 선 충당하여야 하며, 충당하여야 하는 손실액이 적립된 환경피해준 비금을 초과하면 제35조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에서 지급하 여야 한다.
  - ⑤ 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·관리와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 부령으로 정한다.

제36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대규모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환경피해준비금 초과 보험금의 지급

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환경피해준비금의 조성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제18 조제1항에 따라 보험자가 환경부장관과 체결한 약정에 환경피해준 비금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피 해준비금으로 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8조의2(기초서류의 제출・변경등) ① 제1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하려는 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 1. 사업방법서, 보험약관,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(이하"기초서류"라 한다)  2. 그 밖에 정관, 법인등기부등본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서류 ② 보험자는 환경책임보험의보험의보험요율을 객관적이고합리적인통계자료를 기초로하여다음 가호를 반영하여보험가입대상 시설별로 산정하여야한다.  1. 「보험업법」 제129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적용할 것  2. 제38조의2에 따른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

<신 설>

### 할 것

③ 환경부장관은 보험자가 제1 항에 따른 기초서류를 제출・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보건위원 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, 보 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 대하여 「보험업법」 제1 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 관 또는 같은 법 제128조제2항 에 따른 독립계리업자의 검증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 다.

제18조의3(환경피해준비금의 조성) ① 보험자는 대규모 환경 오염피해 위험에 따른 보험금 지급에 대비하기 위하여 환경 오염피해 준비금(이하 "환경피해준비금"이라 한다)을 적립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환경피해준비 금은 환경책임보험의 순보험료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율로 적립한다.
- ③ 환경피해준비금은 제2항에 따른 적립금과 그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

제36조(구제계정의 용도) 구제계 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.

1. ~ 6. (생 략) <신 설>

7. (생략)

다.

④ 보험자는 대규모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보험금이 대통령 령으로 정한 손해율에 따른 보 험금을 초과할 경우 환경피해 준비금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하며, 충당하여야 하는 손실액 이 적립된 환경피해준비금을 초과하면 제35조에 따른 환경 오염피해구제계정에서 지급하 여야 한다.

⑤ 환경피해준비금의 적립·관 리와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렁으로 정한다.

제36조(구제계정의 용도) -----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대규모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환경피해준비금 초과 보험금 의 지급

8. (현행 제7호와 같음)